

헬스케어3.0센터운영규정

제정 : 2016.04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대원대학교 헬스케어3.0센터(Healthcare 3.0 Center)라 칭한다.(이하“본 센터”라 한다)

제2조(설립목적) 본 센터는 인간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, 지역의 보건의료관련 학생 및 의료 종사자에게 선진화된 보건의료교육을 실현하고, 헬스케어분야와 관련된 전문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신기술(제품)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내용) 본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교육사업

- 가. 보건의료인 및 기타 의료종사자 교육 <개정 2020. 03. 01.>
- 나.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교육
- 다. 지역민 대상 응급처치 및 안전 교육
- 라. 재학생 대상 특성화관련 교육

2. 개발 및 컨설팅 사업

- 가. 헬스케어 관련 신기술 개발
- 나. 헬스케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<개정 2020. 03. 01.>
- 다. 헬스케어 관련 컨설팅

제2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 ①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교직원 및 운영위원회)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3장 교육 부문

제6조(교육개설) 본 센터의 교육은 교육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모집, 산업체 등 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 승인 후 개설하여 실시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교육대상) 본 센터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학생, 보건의료인, 기타 의료종사자,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 또는 특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력·연령·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8조(교육생 선발) 본 센터 학습자는 개설과정의 수준 및 대상을 감안하여 선발하며, 필요한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9조(교육진행) 본 센터의 교육 진행에 필요한 규정은 교육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 규정에 근거하여 센터장의 확인을 거쳐 시행하되, 교육 진행 시 재학생의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료) 본 센터 교육 수료자는 교육과정의 총 교육시간 중 80% 이상 참여자 또는 일정 평가에 합격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4장 개발 및 컨설팅 부문

제11조(기술 및 제품개발) ① 본 센터는 보건계열 뿐 아니라 관련 학과 간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기술(프로그램)을 개발하되, 재학생의 참여, 지역 산업체,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고려한다.

② 개발된 내용은 대학의 수익모델로 발전시키고, 학생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.

제12조(컨설팅) 본 센터는 지역산업체 및 헬스케어 관련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하며, 센터장은 컨설팅 내용에 따라 팀을 구성하되 재학생의 참여를 고려한다.

제5장 회 계

제13조(회계년도) 본 센터는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예산편성 및 결산) 본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5조(회계 집행) ① 본 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.

② 본 센터의 회계업무는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